



출연연, 대학 주도에서 기업 주도로

연구
주도권



기업 직접 개발(폐쇄형)에서 **개방형 R&D**로

연구
형태



예산 지원에서 기술 지원으로

지원
수단



신청기간 및 방법



신청기간

2021 - 1차 사업 : 2021. 1. 20(수) ~ 2021. 2. 16(화)

2021 - 2차 사업(예정) : 2021. 3월중 ~ 2021. 4월중

신청방법

정보통신기획평가원(IITP) 사업관리시스템(ezone.iitp.kr)에 기본사항을 등록한 후, 신청서(연구개발계획서)를 첨부하여 전산 등록

전산 등록 시 유의사항



- 신청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, 마감시간 이후에는 전산등록 불가함
(신청완료 확인 방법 : “확인 및 제출” 메뉴 → “제출완료” 확인)
-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전산등록 완료하여야 함
-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(ezone.iitp.kr)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(일반 사용자 가입 필요)

2021
ICT R&D
혁신 바우처
지원사업

2021

ICT R&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



사업 및 매칭 문의

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사업화팀

042-612-8573~8579

전산 접수 문의

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서비스팀

042-612-8060~8061

사업목적

대학·출연연 등이 보유한 ICT 핵심기술을 빠른 시간내에 전산업 분야로 확산하여 중소·중견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지원개요



※ 본 사업은 주관·공동연구개발기관이 매칭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임

지원내용

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·중견기업)의 필요기술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하여 제공 (정부는 기업에게 R&D 바우처를 지급하고, 정부출연금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함)

지원대상

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·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新제품·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新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·중견기업(법인에 한함)

지원예산

총 547.26억원

1차 (403.2억원), 2차 (144.06억원)

지원유형

융합촉진형(12개월)

1년 이내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ICT기반 이종기술·산업간 융합新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

중기지원형(21개월)

ICT 혁신기술(AI, 빅데이터, 클라우드 등)을 통한 ICT기반 이종기술·산업간 융합新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

사업비

과제당 5억원 이내

사업비

과제당 (1차 년도) 4억원 이내
과제당 (2차 년도) 4억원 이내

* 이종기술 : ICT 기술분류체계상(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)의 중분류 이상 기술간 융합
* 이종산업 : ICT와 비ICT기술간 융합(단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개발기술은 ICT 또는 ICT가 융합된 기술이어야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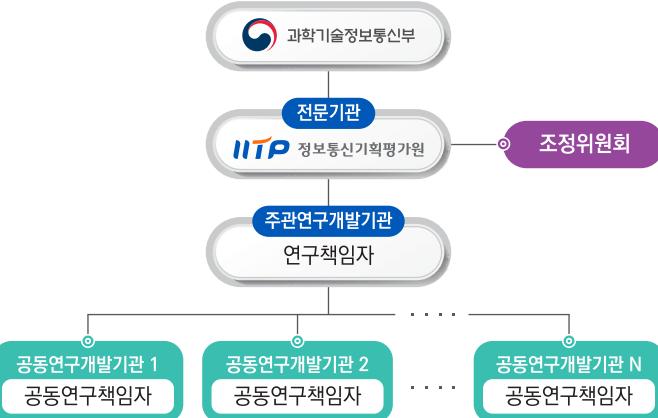
지원분야

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* 와 5G, AI, 비대면(언택) 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

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분야

- ① 스마트시티
- ② 스마트공장
- ③ 스마트 팜
- ④ 핀테크
- ⑤ 에너지산업
- ⑥ 드론
- ⑦ 바이오헬스
- ⑧ 미래자동차

사업 추진체계



사업 추진 일정(계획)

DAY



*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기술매칭 지원 서비스

▶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찾고 싶을 경우, ICT R&D 혁신 바우처 기술매칭시스템 (이지매칭 <https://ezmatching.iitp.kr>)을 통해 매칭 신청 등록

▶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IITP 매칭코디네이터 및 매칭중개기관을 통해 기술매칭을 지원할 예정

매칭데이(매칭상담회)

1차 (21. 1월초), 2차 (21. 1월말(예정))
(매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임)

매칭지원 절차

ICT R&D 혁신 바우처 기술매칭시스템(이지매칭)에 매칭 신청(기업)
→ IITP 또는 매칭중개기관이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(전문연구기관)
탐색 및 추천 → 매칭데이 개최 → 매칭연결 및 사업계획서 작성
→ ICT R&D 혁신 바우처사업 신청

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



바우처 사업 기준

정부출연금 등 지원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

연도별 연구비의 75% 이내

중견기업인 경우

연도별 연구비의 60% 이내

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

연도별 민간부담금의 5% 이상

중견기업인 경우

연도별 민간부담금의 6.5% 이상